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억 이상 적용)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작성요령 수록)

2019. 4.



국 토 교 통 부
○○국토관리사무소

I . 일반사항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관내 도로분야시설물(교량 및 터널, 옹벽 및 사면 등)의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이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2조제1항, 「건설기술진흥법」(이하“건진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4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또는 제12조 및 **제40조의** 규정과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2018.1.4.))”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8-942호(2018.12.26.))**”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평가의 기본 원칙

가. 제출기간 내 접수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근거하여 평가한다.

나. 본 과업의 참가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해당분야 : 교량 및 터널)으로 등록된 업체로 하며(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특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할 수 있다.

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기술용역은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도 가능하다.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점검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 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 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정밀안전진단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일 것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비고

1. 책임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충족할 수 있다.
-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

※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해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 성능평가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조물의 성능 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

다. 「시설물안전법」 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PQ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라.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는 반올림한다.

마.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을 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업체가 5개사 미만인 때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되, 80점미만인 업체는 제외하며, 최종 선정된 입찰에 참여 할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공고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 PQ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제출자료의 사실입증을 위하여 관련협회 및 소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거나 입증자료가 없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평가자료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평가대상)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 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건설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국토관리사무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다.

차.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 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카.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 중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사업명 및 사업 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 해서 판단할 수 있다.)

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평가위원회 구성

가.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

지며 위원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1) 평가기준 또는 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이의사항 및 의문발생시
-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 3) 기타 ○○국토관리사무소장이 평가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소장) 1인, 위원 5인(운영지원과장, 보수과장, 구조물과장, 보수계장, 구조물계장)으로 구성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은 회의만 주재하고 위원회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5. 용어의 정의

가. 도로시설물 : 도로분야 교량 및 터널시설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도로부속물의 옹벽 및 절토사면)을 말한다.

※ 도로분야 교량 및 터널은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으로 한정한다.

나. 철도시설물 : 철도분야 교량 및 터널시설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철도부속물의 옹벽 및 절토사면)을 말한다.

다. 기타시설물 : 위 도로 및 철도시설물을 제외한 토목시설물(수리시설분야, 항만분야)을 말한다.(단, 건축물은 제외)

라. 안전진단·점검 :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 긴급(초기)점검, 내하력평가(조사)를 말한다.(단, 성능개선, 안전성검토, 수중조사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다만, 1999.1월 시특법 개정 이전에 실시한 정기점검은 정밀안전점검으로 인정

※ 초기점검은 발주처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만 인정. 다만, 발주처가 시공사일지라도 초기점검내용 중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가 첨부될 경우에는 인정(* 실적증명서에는 구조물 현황[구조물명 및 규모 표기] 및 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마.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 시설물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말한다.

바. 국가 및 공공기관 : 건진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처”의 범위로 하며, 단,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6. 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

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발주청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갑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법 시행규칙 서식 18호)에 따르며, 유사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투자실적·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부분)에 편철하고 별도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은 단독 또는 2개 업체 이상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세부평가기준은 우리 사무소에서 2019.4.00. 이후 발주 공고하여 시행하는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1억원 이상)에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자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업체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우리 사무소에서 평가중이거나 동시에 발주한 용역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우리 사무소에서 같은날 공고한 용역에 대해 같은 업체가 2건 이상의 용역에 적격심사대상이 되었을 경우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1건의 용역에만 참여하여야 한다. 만약, 2개 이상 용역에 동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에서 2개 이상 용역 모두 평가점수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한다.

⇒ 우리 사무소 보수과에서 평가중이거나 공고중인 옹벽 및 절토사면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에 대해 참여기술인을 조회할 예정이며, 중복될 경우 평가점수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함.

라. 본 과업 수행 시 토목 전문분야에 대하여 책임기술인 2인, 참여기술인 8인으로 제한한다.

책임기술인(2인)	참여기술인(8인) 이하	비 고
사업책임기술인(1인)	참여기술인(4인)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1인)	참여기술인(4인) 이하	

II. 세부평가사항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일반사항

1) 참여자격 :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재직사실이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

2) 평가대상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토목구조 1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용역 :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용역 :

토질·지질 1인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용역 :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용역 :

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

* 분야별책임기술인과 분야별참여기술인은 동일 전문분야로 참여 불가

** [서식3]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참조

3) 경력 및 실적 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경력은 중복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주요 경력/참여기간(인정일)중 “인정일”로 계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2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건설 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 인정방법 등 적용

○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함

- 4)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7년간(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용역사업만 평가(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및 차수준공 용역은 제외)
- 5)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 해당 전문분야(예 - 토목구조 등), 담당업무(안전진단 등)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 발주처, 사업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 예) 사업책임기술인을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기술인을 배치하고자 할 경우 경력 및 실적평가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로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하고 다른 전문분야(도로및공항 등)는 불인정
- 6) 민간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 1) 건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자격은 직무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며, 등급은 전문분야에 대하여 평가한다.

구분	참여기술인			비고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인원 수	1인	각 1인	각 1인	
	토목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영역의 전문분야 <u>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u>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영역의 전문분야 <u>토질·지질 1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영역의 전문분야 <u>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u>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영역의 전문분야 <u>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u> 	
		* 분야별책임기술인과 분야별참여기술인은 동일 전문분야로 참여 불가		
자격	<u>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u>		-	
등급	전문분야 중 <u>토목구조</u> <u>특급기술인</u>	전문분야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영역의 전문분야 <u>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u>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영역의 전문분야 <u>토질·지질 1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인 영역의 전문분야 <u>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u> - 점검 대상시설물이 터널, 사면 및 옹벽인 영역의 전문분야 <u>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시험 중 1인</u> 	
		* 분야별책임기술인과 분야별참여기술인은 동일 전문분야로 참여 불가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인의 자격요건은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경우 책임기술인의 자격은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책임기술인의 자격은 토목 또는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

술인 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과업 규모 및 대상시설물의 특성(구조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과업(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토목구조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2)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및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후 성능평가 교육 14시간을 별도 이수한 자”이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 일수를 차등 계산

용역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시설물, 철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용역수행 경력 ·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용역수행 경력 · 성능평가 용역수행 경력 ·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기타시설물 안전진단·점검	· 안전진단·점검 용역수행 경력 · 성능평가 용역수행 경력 ·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 사업관리 등	· 설계(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시공·감리업무 수행 경력 · 발주처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60%
※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전문분야(토목구조 등), 담당업무(안전진단)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 도로·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경력은 배점의 60%까지만 인정한다.

-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을 365일로 년수를 계산하여 평가 (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기준

-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적 일수를 차등 계산

용역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시설물, 철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용역수행 경력 ·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용역수행 경력 · 성능평가 용역수행 경력 ·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기타시설물 안전진단·점검	· 안전진단·점검 용역수행 경력 · 성능평가 용역수행 경력 ·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 사업관리 등	· 설계(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시공·감리업무 수행 경력 · 발주처 감독 또는 관리자경력	60%
※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전문분야(토목구조 등), 담당업무(안전진단)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을 365일로 년수를 계산하여 평가(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4) 참여기술인의 실적 중 60% 인정 실적부분의 경우는 **60%까지만** 인정한다.
- 5) 실적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 중 건당 전체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및 차수준공 용역은 제외)
 -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 실적은 국가 및 공공기관(발주기관)로부터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2. 참여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초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에 적용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중 건당 전체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아래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및 차수준공 용역은 제외)

구분		가중치	비 고
도로시설물 및 철도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준공금액 1억이상	100%	
	준공금액 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90%	
	준공금액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80%	
기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준공금액 1억이상	70%	
	준공금액 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60%	
	준공금액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50%	

-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 실적은 국가 및 공공기관(발주기관)로부터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나. 또한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민간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 1) 용역업자가 시설물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가 평가결과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해 평가한다.
-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 3) 평가결과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씩 건수에 따라 감점한다.

나.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1) 용역업자가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 2) 참여기술인이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5)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2) 건설신기술의 사용실적은 건진법 시행규칙 제10조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실적에 대해 건진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3) 특허의 사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4) 건진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1점까지만 인정한다.(건설신기술 : 1.0/건당, 특허 : 0.6점/건당)
- 5)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6)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한다.)
- 2) 특허의 출원인(법인 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업무 중복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용역 중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30일)이상인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사업책임기술인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6.0	5.4	4.8	4.2	3.6

2) 분야별책임기술인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4.0	3.6	3.2	2.8	2.4

다. 제출된 평가서상의 수행중인 용역사업 현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책임기술인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한다.

라.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인, 분야별 책임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한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 미산입)

6.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용역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1일~1월이하 0.2점, 2월이하 0.4점...)

2)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10% 감점(1일~3월이하 0.2점, 6월이하 0.4점...)

7.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가.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자	소 계	45												
	(1) 사업책임기술인	18	○ 자격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전문분야 토목구조 특급기술인											
	(가) 등급	-	○ 등급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자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토목구조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나) 경력	8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tr> <td>10년 이상</td> <td>10년 미만 9년 이상</td> <td>9년 미만 8년 이상</td> <td>8년 미만 7년 이상</td> <td>7년 미만</td> </tr> <tr> <td>8</td> <td>7.2</td> <td>6.4</td> <td>5.6</td> <td>4.8</td> </tr> </table>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8	7.2	6.4	5.6	4.8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8	7.2	6.4	5.6	4.8									
	(다) 실적 (최근 7년간)	준공건수	5	- 기술인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table border="1"> <tr> <td>14건 이상</td> <td>14건 미만 12건 이상</td> <td>12건 미만 10건 이상</td> <td>10건 미만 8건 이상</td> <td>8건 미만</td> </tr> <tr> <td>5</td> <td>4.5</td> <td>4</td> <td>3.5</td> <td>3</td> </tr> </table>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5	4.5	4	3.5	3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5	4.5	4	3.5	3									
	준공금액	5	- 기술인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금액) <table border="1"> <tr> <td>7억원 이상</td> <td>7억 미만 6억 이상</td> <td>6억원 미만 5억원 이상</td> <td>5억원 미만 4억원 이상</td> <td>4억원 미만</td> </tr> <tr> <td>5</td> <td>4.5</td> <td>4</td> <td>3.5</td> <td>3</td> </tr> </table>	7억원 이상	7억 미만 6억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5	4.5	4	3.5	3	
	7억원 이상	7억 미만 6억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5	4.5	4	3.5	3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자격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가) 등급	2	○ 전문분야의 기술인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 -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지질 , 토목품질시험 <table border="1"> <tr> <td>특급기술인</td> <td>고급기술인</td> <td>중급기술인</td> <td>초급기술인</td> </tr> <tr> <td>2</td> <td>1.8</td> <td>1.6</td> <td>1.4</td> </tr> </table>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2	1.8	1.6	1.4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2	1.8	1.6	1.4											
(나) 경력	6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tr> <td>7년 이상</td> <td>7년 미만 6년 이상</td> <td>6년 미만 5년 이상</td> <td>5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td> </tr> <tr> <td>6</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able>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6	5.4	4.8	4.2	3.6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6	5.4	4.8	4.2	3.6										
(다) 실적 (최근 7년간)	준공건수	5	- 기술인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table border="1"> <tr> <td>11건 이상</td> <td>11건 미만 9건 이상</td> <td>9건 미만 7건 이상</td> <td>7건 미만 5건 이상</td> <td>5건 미만</td> </tr> <tr> <td>5</td> <td>4.5</td> <td>4</td> <td>3.5</td> <td>3</td> </tr> </table>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5	4.5	4	3.5	3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5	4.5	4	3.5	3										
준공금액	5	- 기술인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금액) <table border="1"> <tr> <td>5억원 이상</td> <td>5.0억 미만 4.5억 이상</td> <td>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td> <td>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td> <td>3.5억원 미만</td> </tr> <tr> <td>5</td> <td>4.5</td> <td>4</td> <td>3.5</td> <td>3</td> </tr> </table>	5억원 이상	5.0억 미만 4.5억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5	4.5	4	3.5	3		
5억원 이상	5.0억 미만 4.5억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5	4.5	4	3.5	3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가) 등급	2	- 토목 해당분야(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지질, 토목품질시험) <table border="1"> <tr> <td>특급기술인</td> <td>고급기술인</td> <td>중급기술인</td> <td>초급기술인</td> </tr> <tr> <td>2</td> <td>1.8</td> <td>1.6</td> <td>1.4</td> </tr> </table>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2	1.8	1.6	1.4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2	1.8	1.6	1.4																							
(나) 경력	3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tr> <td>5년 이상</td> <td>5년 미만 4년 이상</td> <td>4년 미만 3년 이상</td> <td>3년 미만 2년 이상</td> <td>2년 미만</td> </tr> <tr> <td>3</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r> </table>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3	2.7	2.4	2.1	1.8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3	2.7	2.4	2.1	1.8																							
(다) 실적 (최근 7년간)	준공건수	4	- 기술인의 당해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건수) <table border="1"> <tr> <td>8건 이상</td> <td>8건 미만 6건 이상</td> <td>6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 2건 이상</td> <td>2건 미만</td> </tr> <tr>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able>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4.0	3.6	3.2	2.8	2.4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4.0	3.6	3.2	2.8	2.4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소 계	25																									
	최근5년간 정밀안전진단	(가) 건수	12	-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건수) <table border="1"> <tr> <td>10건이상</td> <td>10건 미만 8건 이상</td> <td>8건 미만 6건 이상</td> <td>6건 미만 4건 이상</td> <td>4건 미만</td> </tr> <tr> <td>12</td> <td>10.8</td> <td>9.6</td> <td>8.4</td> <td>7.2</td> </tr> </table>	10건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12	10.8	9.6	8.4	7.2													
		10건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12	10.8	9.6	8.4	7.2																							
(나) 금액	13	- 해당분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금액) <table border="1"> <tr> <td>7억원 이상</td> <td>7억원 미만 6억원 이상</td> <td>6억원 미만 5억원 이상</td> <td>5억원 미만 4억원 이상</td> <td>4억원 미만</td> </tr> <tr> <td>13</td> <td>11.7</td> <td>10.4</td> <td>9.1</td> <td>7.8</td> </tr> </table>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13	11.7	10.4	9.1	7.8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13	11.7	10.4	9.1	7.8																							
다. 신용도	소 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가) 용역업자	3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이하 : 0.2점)																							
		(나) 참여기술인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이하 : 0.2점)																							
재정상태 건실도	(다) 신용평가 등급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table border="1"> <tr> <td>회사채</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어음</td> <td>A2-이상</td> <td>A2-미만 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기업신용</td> <td>A-이상</td> <td>A-미만 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 이하</td> <td>미제출</td> </tr> <tr> <td>점수</td> <td>3.0</td> <td>2.7</td> <td>2.4</td> <td>2.1</td> <td>0</td> </tr> </table>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	10																								
	(가) 개발실적	2	<p>-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p> <p>- 건설신기술 : 1.0점 / 건당 - 특허 : 0.6점 / 건당</p> <p>- 건설신기술 및 특허는 다음과 같이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며 건수 및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가중치</th> </tr> <tr> <th>1.0</th> <th>0.9</th> <th>0.8</th> <th>0.7</th> <th>0.6</th> </tr> </thead> <tbody> <tr> <td>실적 건수</td> <td>50건 이상</td> <td>50건 미만 20건 이상</td> <td>20건 미만 5건 이상</td> <td>5건 미만 3건 이상</td> <td>3건 미만 1건 이상</td> </tr> <tr> <td>실적 금액</td> <td>70억원 이상</td> <td>7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td> <td>25억원 미만 5억원 이상</td> <td>5억원 미만 1억원 이상</td> <td>1억원 미만 0.5억 미만</td> </tr> </tbody> </table> <p>- 기술개발·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p> <p>- 기술개발·사용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p>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 건수	50건 이상	50건 미만 20건 이상	20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실적 금액	7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0.5억 미만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 건수	50건 이상	50건 미만 20건 이상	20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실적 금액	7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0.5억 미만																					
(나) 투자실적	8	<p>-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p> <table border="1"> <tbody> <tr> <td>3.0% 이상</td> <td>3.0% 미만 2.5% 이상</td> <td>2.5% 미만 2.0% 이상</td> <td>2.0% 미만 1.5% 이상</td> <td>1.5% 미만</td> </tr> <tr> <td>8</td> <td>7.2</td> <td>6.4</td> <td>5.6</td> <td>4.8</td> </tr> </tbody> </table>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8	7.2	6.4	5.6	4.8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8	7.2	6.4	5.6	4.8																						
소 계	10																									
마.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6	<p>- 현재 수행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잔여기간을 합산</p> <table border="1"> <tbody> <tr> <td>12월 미만</td> <td>12월 이상 15월 미만</td> <td>15월 이상 18월 미만</td> <td>18월 이상 21월 미만</td> <td>21월 이상</td> </tr> <tr> <td>6.0</td> <td>5.4</td> <td>4.8</td> <td>4.2</td> <td>3.6</td> </tr> </tbody> </table>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6.0	5.4	4.8	4.2	3.6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6.0	5.4	4.8	4.2	3.6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4	<p>- 현재 수행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잔여기간을 합산</p> <table border="1"> <tbody> <tr> <td>12월 미만</td> <td>12월 이상 15월 미만</td> <td>15월 이상 18월 미만</td> <td>18월 이상 21월 미만</td> <td>21월 이상</td> </tr> <tr> <td>4.0</td> <td>3.6</td> <td>3.2</td> <td>2.8</td> <td>2.4</td> </tr> </tbody> </table>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4.0	3.6	3.2	2.8	2.4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4.0	3.6	3.2	2.8	2.4																						
소 계	10																									

나.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p>-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p>*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p> <p>*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p> <p>*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p> <p>-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p> <p>-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p>

Ⅲ.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1. 용역개요

가. 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제본순서)

가. 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1) 표지[서식 1]
- 2) 적격심사신청서[서식 2]
-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 4)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서식 3]
- 5) 참여기술인 총괄[서식 4]
*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첨부(공고일 기준)
- 6)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서식 5]
- 7) 참여기술인(사책, 분책, 분참) 경력증명서
- 8)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6]
- 9) 참여기술인 교육수료증
- 10)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서식 7]
- 11) 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 1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서식 8]
- 13)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서식 9]
- 14)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 15) 부실별점 현황[서식 10]
- 1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서식 11]
- 17) 기술개발·투자실적[서식 12]
- 18) 신기술, 특허 등록 증명서
- 19)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 20) 신기술, 특허 실적 증명서
- 21)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서식 13]
- 2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산출근거[서식 14]

※ 경력 및 실적증명서 등 근거자료는 각 서식 바로 뒤에 첨부토록 한다.

※※ 첨부서류 서식5는 엑셀 전산파일(CD 또는 USB 등)로 반드시 제출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분 1부)

규 격 : A4(210cm × 296cm), 좌철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우리 소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 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불인정한다.

나. 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 하지 않는다.

라.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용역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의 처리한다.

바.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

다.

[서식 1]

국 토 교 통 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리 번호	
----------	--

사업수행 적격심사자료 (용역명)

2019. 00.

○ ○ ○ ○(주)

담당자	직장전화번호	긴급연락처	팩스(FAX)번호
○○○	○○○-○○○-○○○○	○○○-○○○-○○○○	○○○-○○○-○○○○

적격심사신청서

- 용역명 :
- 발주기관 :
- 입찰일시 :

위 건 용역입찰의 PQ심사와 관련하여 PQ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PQ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소 :
회사명 : (TEL.)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 ※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으로 구성
- ※ 사업책임기술인 1인을 제외한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은 동일한 전문분야로 참여 불가.
- ※ ex)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토목구조인 경우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토목구조가 아닌 도로 및 공항이나 토목품질시험으로 참여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분	야	등	급	주	민	자			학		소	비	
								격	내	용	력	내			용
						등		명		취		취			
				번		호		취		취		취			
				호		번호		학		종		취			
				호		번호		학		종		취			
사	업	○	○	○											
책	임	○	○	○											
기	술	○	○	○											
인		○	○	○											
분	야	○	○	○											
책	임	○	○	○											
기	술	○	○	○											
인		○	○	○											
분	야	○	○	○											
참	여	○	○	○											
기	술	○	○	○											
인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

- ※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참여기술인 1인으로 구성하며, 사업책임기술인 1인을 제외한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참여기술인 1인은 전문분야가 중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 참여기술인은 시특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인격자 및 학력, 경력자이어야 합니다.
- ※ 참여기술인은 ‘시특법 시행령 제7조 별표2’ 및 ‘건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거 다음과 같은 토목직무분야 기술인(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 ※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서식 5]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 명		소속회사		주민번호 (연령)	(만 세)
기술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자격증 (분야및종류)		금 회 참여분야			
경 력	1059일÷365일= 2.9년	실적	건수	건	
			금액	백만원	
자격정지	개월("해당없음"은 표시)				

2. 경력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 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청	직무 분야	전문 분야	담당 업무	해당 페이지
			착수	준공	인정일 (A)	인정율 (%) (B)	인정 기간 (C)					
	산정결과						2.3년	1년=365일				
계	건						1059	1059/365				
1	국도3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8. 01.01	2009. 12.31	365	100%	365	XX 국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 안전 진단	p.171
2	국도5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9. 01.01	2010. 06.30	182	80%	145.6	00시	토목	토목 구조	정밀 안전 진단	p.172
3	국도34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0. 01.01	2011. 12.31	184	60%	110.4	XX 국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 안전 진단	p.173
4	국도36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1. 01.01	2012. 06.30	365	60%	219	00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 안전 진단	p.174

3. 실적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 분야)	참여기간		발 주 청	실적		지분 율 % (C)	인정 율 % (D)	적용실적		해당 페이 지
			착수	준공		건수 (A)	금액 (백만원) (B)			건수 (A*C*D)	금액 (백만원) (B*C*D)	
	산정결과											
계	건					4	310			2.04	171.6	
1	국도3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8. 01.01	2009. 12.31	XX 국도	1	100	100%	10%	1	100	p.171
2	국도5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9. 01.01	2010. 06.30	00시	1	70	70%	80%	0.56	39.2	p.172
3	국도34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0. 01.01	2011. 12.31	XX 국도	1	60	50%	60%	0.3	18	p.173
4	국도36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1. 01.01	2012. 06.30	00도	1	80	30%	60%	0.18	14.4	p.174

4. 요약

구 분	참여일수	인정율(%)	경력	실적		비 고
도로시설물		100		건수		
				금액		
철도시설물		80		건수		
				금액		
기타시설물		60		건수		
				금액		
총계			= 000,000 /365 년	건수		
				금액		

5.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시점	종점	
			2010. 01.01	2011. 12.31	(주)
비 고					

<작성요령>

-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등의 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 함 (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중인 용역 및 차수준공 용역은 제외)
-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 ※ 구분 : 도로, 철도, 기타 등으로 해당분야별로 구분 작성
- ※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 ※ 교육기간에서의 1주는 5일 계산
- ※ **지분율은 공동도급일 경우 총 준공금액에 대한 해당 도급금액 비율이며, 인정율은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실적평가기준 표의 「용역의 종류」에 따른 평가 비율임.**

용역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시설물 및 철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 긴급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안전진단 용역수행 경력 · 정밀안전 및 긴급안전점검 용역수행 경력 · 성능평가 용역수행 경력 · 발주처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인정율)

- ※ (강조)신속, 정확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참여회사는 [서식5](참여자의 경력 및 실적표) 작성 시 붙임서류인 경력증명서 상 비교란에 [서식5]의 연번을 표기하여 제출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PQ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감리() 기타()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발급부서 :			담당자 :			

※ 작성요령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발주처	실적		지분율 % (C)	인정율 % (D)	적용실적		비고 (공동도급자명, 총준공금액)
			착수	준공		건수 (A)	금액 (백만원) (B)			건수 (A*C*D)	금액 (백만원) (B*C*D)	
산정결과												
계						2	170			1.3	121	
1	국도3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8.01.01	2009.12.31	XX국토	1	100	100%	100%	1	100	100
2	국도34호선 0터널 정밀안전진단	터널	2009.01.01	2010.06.30	00시	1	70	50%	60%	0.3	21	70

-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 건당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 함(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및 차수준공 용역은 제외)
-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 국가 및 공공기관(발주기관)로부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 ※ 과업개요 란에는 용역 시설물 등을 정확히 기재
- ※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 ※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인정율은 참여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표의 「가중치」 적용 비율임.

구분	가중치	비 고
도로시설물 및 철도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금액 1억이상	100%
	준공금액 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90%
	준공금액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80%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역명	발주처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착수	준공			
건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실시 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중 보완 또는 부실처분을 받은 경우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기간			사유	관계법령	처분청	비고
			시점	종점	환산 (월)				
용역 업자			2010. 06.01	2010. 08.31	3				
	계								
참여 기술인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예산회계법령, 「국가계약법」, 「건설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징계처분 등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간은 “○년○월○일~○년○월○일(○월)”로 기재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부실벌점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부과일시	부실점수 (점)	누계평균 부실점수 (점)	감점되는 점수 (점)	비고
용역 자							
	소계						
참 여 기술인							
	소계						

※ 감점되는 점수 : 「건진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가목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상응 회사채 등급

※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등급유효기간이 공고일 이후로 되어 있는 해당 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시 인정한다.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기술개발·투자실적

1. 개발실적

구분	업체명	명칭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소 계						
	소 계						
계							

- ※ 건설기술과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허)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 ※ 비교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활용하여 확인한 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는 인정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text{㉠} + \text{㉡} + \text{㉢})/3] \times \text{참여지분율}$	
										$[(\text{㉠} + \text{㉡} + \text{㉢})/3] \times \text{참여지분율}$	
										$[(\text{㉠} + \text{㉡} + \text{㉢})/3] \times \text{참여지분율}$	
계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기재

※ 3개년 재무제표를 첨부

※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평균비율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

※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은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 및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를 투자 실적에 기재하되 비교란에 자체 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특허의 출원 및 등록 후 업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

※ 회사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 설립 이후의 자료를 제출(제출된 년수로 평가하고자 함)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참여기술인 업무 중첩도

구분	성명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업 책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임 기술인									
	소계	건							
	소계	건							
	소계	건							
합계									

-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발주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3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모두 기재
- ※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자기평가 산출근거

□ 업체명 : (주)00엔지니어링 (연락책임자 : 홍길동, 043-000-000)

1. 집계 현황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수	산출근거
참여기술자	사업 책임기술인	자격	절대평가	-		. 자격(유,무) :
		경력		8		.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5		. 건수 : 건
		실적(금액)		5		. 금액 : 천원
	분야별 책임기술인	자격	절대평가	2		. 자격 :
		경력		6		.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5		. 건수 : 건
		실적(금액)		5		. 금액 : 천원
	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격	절대평가	2		. 자격 :
		경력		3		.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4		. 건수 : 건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절대평가	12	
실적금액			13			. 금액 : 천원
신용도	점검.지단실 시결과 평가결과	용역건수	절대평가	4		. 보완 : 건 . 부실 : 건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	3	
	재정상태 건설도	신용평가 등급		3		. 회사채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절대평가	2		. 건설신기술 : 건, 금액 : 천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금액 : 천원
	투자실적			8		. 투자실적비율 : %
업무 중첩도	사업책임기술인		절대평가	6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분야별책임기술인			4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합 계				100		
총 점				100		

2. 평가 내역

평가항목		세부내용 및 실적							비고
참 여 기술인	구 분	업체명	성 명	자 격	경 력	유사용역 실적	유사용역 실적		
	사업 책임 기술인	토목 구조				___년 ___월	___건 ___천원		
	분야 책임 기술인	토목 구조 등				___년 ___월	___건 ___천원		
						___년 ___월	___건 ___천원		
	분야 참여 기술인	토목 구조 등				___년 ___월	___건 ___천원		
					___년 ___월	___건 ___천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건 수	___건						
		금 액	___건						
신 용 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보완 : ___건 부실 : ___건						
	업체정지기간	1년기준(월)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월)	구 분	성 명			개월 수			
		사업 책임 기술인	(구조 or 도로및 공항)						
		분야 책임 기술인	구조						
		분야 참여 기술인	구조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신 기 술	실적건수 : ___건, 실적금액 : ___천원						
		신 기 술	___건						
		특 허	실적건수 : ___건, 실적금액 : ___천원						
		특 허	___건						
	투자실적 (억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실적비율		
		건설투자액					___%		
총매출액									
기술인 업 무 중첩도	구 분	성 명	건 수	중복기간					
	사업책임기술인			___개월					
	분야책임기술인			___개월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가.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나.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다.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경력외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않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함.
([예시] 경력외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
- 마. 자기평가서 내 공란은 파란색으로 채우시기 바람.